
감 사 보 고 서

- 2026년도 주안5동 자체종합감사 -

미추홀구

I

감사실시 개요

□ 감사목적

- 주민자치센터, 예산·회계, 주민등록, 사회복지, 자원순환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2026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실시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체감사 규칙」 제3조(감사대상기관)
-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 [감사실-11478(2025.12.16.)호]

□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 감사기간: 2026. 6. 25.(목) ~ 6. 30.(화) **【4일】**
- 감사범위: 2023년 6월 ~ 2026년 5월 (3년)
- 감사분야: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 전반
- 감 사 반: 감사반장 외 4명 및 구민감사관 1명

□ 중점 감사내용

-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
- 예산·회계·공사 업무 처리 전반
-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청소업무 등 추진실태 등
- 통합민원처리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 불합리한 관행 제도 개선(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II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계	행정상			비고
	시정	주의	기관경고	
19	11	7	1	

□ 처분요구 목록

연번	분 야	제 목	처 분 내 역
1	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주의 요구
2	일반행정	통장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요구
3	복 무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시정 요구
4	계 약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요구
5	회 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관경고, 시정 요구
6		급식비 집행 부적정	시정·주의 요구
7		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요구
8	주민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요구
9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시정 요구
10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요구
11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주의 요구
12	인 감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처리 부적정	시정 요구
13	사회복지	장애인 재판정 촉구 통지 지연	주의 요구
14		청소년증 발급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요구
15	자원순환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요구
16	민 방 위	민방위 당연제외자 관리 미흡	시정 요구

Ⅲ

지적사항 세부내용

주 민 자 치

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주의]

-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사의 결과, 확정된 자치계획안, 주민총회 개최 결과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23~'24년도 자체감사 결과와 '26년도 자치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사용 중인 시설과 물품은 관리대장에 담당자, 담당 및 동장이 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대장에 동장의 결재와 새로 구매한 음향장비 기재를 누락하였으며, 강사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수 절차인 만족도 평가를 강사 별이 아닌 전체 강사진의 평가로 대체한 사실이 있음.

일 반 행 정

① 통장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총무과 “통·반장 조직 운영 계획”에 따르면 통장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회의수당은 출석부의 서명내역을 확인 후 월 말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월정수당을 최대 3일까지 지연 지급하거나 회의수당을 익월에 지급하였음.

복 무

①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학부모알림장, 가정통신문, 진단서, 약국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미성년 자녀 돌봄의 사유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승인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가 아닌 직계존속의 돌봄을 위해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계 약

1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의 목적·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를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의무 이행 지연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률과 지연배상금률을 각각 정해야 함에도 계약보증금률과 지연배상금률을 누락하여 계약서를 작성, 보완요구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의 상대방이 제출한 착수(착공)신고서를 최대 16일까지 지연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수 등록하였고 완료(납품)신고서에 기재된 완료(납품)일자와 실제 완료(납품)일이 상이함에도 이를 보완 없이 그대로 접수·처리하였으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완료보고나 검사(수)조서 작성 없이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정기 하자검사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회 계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관경고][시정]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의2】‘업무추진비 공통사항’에 따라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성격의 품의를 하면서 집행의 일시, 장소, 대상, 금액 및 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대상 인원을 기재하지 않고 품의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아울러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월·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지 않고 특정 월에 집중하여 집행하였고 「미추홀구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에 반하여 상품권 배부대장 작성을 누락하거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일부 공개를 누락 또는 금액을 오기재하여 공개한 사실이 있음.

② 급식비 집행 부적정 [시정·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의2】에서 정하는 1인당 1식의 급식 단가는 9,000원(2024. 6. 1. 이전은 8,000원) 이내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해 집행할 수 있음에도 해당일의 초과근무자가 아닌 사람이 급식비를 사용하거나, 2023년 12월에 사용한 급식비 일부를 다음 해 1월 급식비에 포함하여 품의하고 집행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③ 여비지급 부적정 [시정]

-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4시간 미만의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 1만 원을,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 원을 지급하되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은 실비로 지급하고 관용차량 이용 시 1만 원을 감액하여야 하나, 4시간 미만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 건에 대하여 각 1만 원을 정액 지급하거나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자의 여비 1만 원을 감액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 민 등 록

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 [별표4]에 의거, 지연기간 및 최고·공고 여부에 따라 10만원 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연기간을 착오 계산하여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이 있음.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시정]

-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려는 경우 5천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재발급 신청 사유가 자연훼손, 기재사항 변경, 변경내용란 부족 등인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되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회수하여야 하며,

-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2006. 11. 1. 이전에 발급된 보안 미적용 증은 재발급 시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고,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5,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수수료 부과 대상을 무료로 처리하거나 면제 대상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였고, 재발급 신청서에 수수료 금액을 인증처리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의 신고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망 신고 지연기간을 착오하여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이 있음.

4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2022년 주민등록 사무편람』,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학민원 수수료와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등기 우편 수수료를 익일 수납처리하여야 하나, 감사 대상기간 동안 다음 날이 아닌 다음 달에 지연하여 수납처리하는 등 세입세출외 현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음.

인 감

1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처리 부적정 [시정]

- 「인감증명법」 및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변경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나, 인감변경신고를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인증처리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인증처리하였음.

사 회 복 지

① 장애인 재판정 촉구 통지 지연 [주의]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등록장애인의 재판정”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기한 3개월 전에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발송하여 재판정 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1개월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정 촉구 통지를 최대 9일까지 지체한 사실이 있음.

② 청소년증 발급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르면 청소년 본인이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만 14세미만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이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증 발급의 대리 신청은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어야 하나, 청소년이 14세 미만임에도 법정대리인의 서명 없이 또는 청소년의 친권자가 아닌 다른 대리인이 신청하였음에도 청소년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인화된 사진이 아닌 컬러 프린터 출력물을 제출받고도 보완요구 없이 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자 원 순 환

①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 ‘개별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별로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일반기준 다.’에 따라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2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에도 “사소한 부주의”로 볼 근거가 전무한 무단투기자 2인에 대하여 과태료 50%를 부당하게 감경하거나 위반행위 별 과태료를 잘못 적용하여 과소 부과하였음.

민 방 위

① 민방위 당연제외자 관리 미흡 [시정]

-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자, 학생 등은 민방위 제외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민방위 업무지침에서는 병역처분 결과 5급으로 판정된 병역대상자는 만 20세부터 민방위대 편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이 변경된 22인을 민방위로 편성하지 않았고, 학생 사유로 편성이 제외된 2인에 대해 졸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음.

□ 수범(미담)사례 [1/2]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사랑담은 밀반찬 지원 사업
사업기간	연 중
사업개요	○ 대상: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 내용 - 밀반찬, 계절김치, 절기음식 등 제작 및 전달하며 대상자 안부 확인 - 취약계층에 건강한 밥상 지원으로 식생활 개선 및 건강 유지
추진사항	○ 추진실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사업비 신청: 수시 - 밀반찬 지원사업(18세대, 5회): 2025. 4월~10월 - 열무김치 및 오이무침 지원사업(50세대): 2025. 6월 - 김장김치 지원사업(개인 104세대, 경로당 13개소): 2025. 11월 ○ 향후 추진계획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발굴 및 운영: 연중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안부 확인: 연중
기대효과	○ 민관 협력 사업 발굴 및 취약계층에 건강한 밥상 지원으로 건강 돌봄 ○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복지안전망 구축
예 산 액	2,000천 원(구 보조금, 학산나눔재단 기탁금 활용)

관련사진



□ 수범(미담)사례 [2/2]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저소득 아동·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기간	연 중
사업개요	○ 대상: 저소득 아동·청소년 ○ 내용: 관내 종교단체, 자생단체 등의 지정기탁 후원을 받아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추진사항	○ 추진실적 - 용화선원 장학금(총60명, 총20,000천 원): 2025. 5월, 10월 - 주안5동 통두레 장학금(총10명, 총5,000천 원): 2025. 12월 - 염전골청소년육성회 장학금(총3명, 총1,200천 원): 2025. 5월~12월 ○ 향후 추진계획 - 장학금 지원 대상자 발굴: 수시
기대효과	○ 관내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정기적 후원으로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의욕 고취
예 산 액	비에산(용화선원, 주안5동 통두레, 염전골청소년육성회 지정기탁)

관련사진

